

- 단, 편입생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, 1990~1991년 편입생 까지 가산연수를 인정함

(3) 특수학교(학급) 가산연수

(가) 적용 대상

-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
-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하는 교원

(나) 적용 방법

-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(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를 포함) 졸업자 : 2년 인정
- 수학연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: 1년 인정
-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: 1년 인정

[특수학교(학급) 가산연수 인정 시 주의사항]

- 위 대상자가 일반학교 근무 또는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여 특수학교(학급) 가산연수를 배제해야 함
-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일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일반학급을 담당하다가 특수학급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 함



-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정교사(1급)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호봉획정 방법은?
 ↗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기산호봉을 8호봉으로, 교육대학을 졸업했으므로 가산연수는 2년을 적용하여 호봉을 확정함

(4) 동등자격에 의한 인정학력

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6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동등자격,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동등자격, 영 별표23 비고 제5호의 구학력 대비표에 의한 동등자격을 적용함

마) 기산호봉

(1) 적용 대상 및 가산연수 요약표

자격종별	기산호봉	자격종별	기산호봉
정교사(1급)	9	준교사	5
정교사(2급)	8	실기교사	5
전문상담교사(1급)	9	보건교사(1급)	9
전문상담교사(2급)	8	보건교사(2급)	8
사서교사(1급)	9	영양교사(1급)	9
사서교사(2급)	8	영양교사(2급)	8